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116~116p 번호 : 02	오타	<p><b>정답해설</b></p> <p>⑤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[2017마565].</p>	<p><b>정답해설</b></p> <p>⑤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[2017마1565].</p>
117~117p 오답해설 ③ 번호 : 03	해설	<p><b>오답해설</b></p> <p>③ <u>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은 정관변경을 요하므로,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(근저당권 설정행위)는 물건계약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.</u></p>	<p><b>오답해설</b></p> <p>③ <u>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[2017마1565].</u></p>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 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